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요약)

【 2021. 6. 30.(수)/ 감사담당관 】

1 감사 개요

- (목적) 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반복 지적사항 발생 예방과 감사결과 이행 실효성 확보
- (대상) 최근 3년간(2018~2021. 4.) 감사원, 자체감사 처분 이행조치 및 개선실태
- (기간/인원) 2021. 5. 31.(월)~6. 11.(금), 2주간/ 감사담당관 등 9명
※ 비대면 감사(서면감사)로 실시

2 감사결과 총괄

- 종합감사 13개, 특정감사 23개 등 총 62개 감사 후 416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적정성과 개선실태 점검
- 감사처분요구 조치 적시성 확인결과 처분요구 416건 중 33건이 조치기한 30일 초과,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조치 적정성 확인결과 신분상 조치 총 117건 및 재정상 조치 총 15건(14,797천 원)은 감사처분 요구대로 적정조치함
- 특히, 연구용역 수의계약, 예산의 목적 외 집행, 기상장비 구매 발주 지연으로 인한 이월 등 유사·반복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개선
- 다만, 제도개선을 요구한 통보(142건), 개선(5건)은 조치계획을 마련했으나 조치계획 이행 미흡사항 일부 발견(처분 및 조치요구)

【 감사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 】

① 연구용역 수의계약 최소화 등 관리체계 개선

- 2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 심의강화 등 추진, 2019년 이후 수의계약 발주 “0건”
- 다년도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연구용역 조기발주로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여 성과물 품질향상에 노력

② 소액 수의계약 등 회계관리 분야 개선

- 계약서류 미비, 수의계약 분할발주(특정업체 소액 수의계약),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개선
 - 수의계약 체결 기준 강화, 주요사업·관서운영경비 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발 방지
- 수감기관의 2020년 이후 계약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 ※ 일부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건에 대해선 감사실시 중 시정조치

③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개발사업 관리실태

- 2011년~2019년 개발 성과물 51건 중 현재 서비스 중인 성과는 28건
 - 나머지 23건은 3~4년 서비스 후 활용 중단
- ※ 성과물에 대한 활용성 평가를 통해 수요 저조, 활용도 저하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과 사후관리 필요

④ 기상관측장비 가격조사 개선으로 장비구매사업 추진 활용도 제고

- 최신 5년 중심의 가격정보 조사, 기상 및 방재 관련 다수의 유관기관에 제공

⑤ 기상관측장비 구매사업 조기 발주,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 기상장비 구매사업 추진 시기를 예산 확정 시점부터 발주 준비
- 전년도 연말에 제안요청서(RFP) 작성·확정하여 조기 발주
- 2019년 이후 기상관측장비 구매사업 사고이월 “0건”

4

감사처분 개요

□ **감사처분 총괄표**

| 구분 | 징계 | 경고 | 주의 | 시정 | 개선 | 통보 | 현지 시정 | 계 |
|------------------|----|----|----|-----------------|----|----|----------|---|
| 처분요구 (인원, 금액) | - | - | - | 1 (648,500원) | - | 6 | - | 7 |

□ **감사처분 목록**

| 번호 | 제 목 | 처분종류 | 기관(부서) |
|----|----------------------------|------------------|---|
| 1 | 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용역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 시정 (648,500원) | ○○○○○○○○ (□□□□□과) |
| 2 | 원격근무지 검사방안 마련 미흡 | 통보 | ●●●●●●●● (◇◇◇◇◇◇과) |
| 3 | 항공기상특보 발표 세부기준 불합리 개선 지연 | 통보 | ◎◎◎◎◎ (◆◆과) |
| 4 | 장비장애 조치 관련 계획정지 관리 미흡 | 통보 | ■ ■ ■ ■ ■ (△△△△과) |
| 5 | 기상관측장비 예비품 이력관리 미흡 | 통보 | ▮▮▮▮▮▮▮▮▮▮ (▲▲▲▲실) |
| 6 | 개별운영 중인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통합운영 미흡 | 통보 | ◆◆◆◆◆◆◆◆ (☒☒☒☒과) ■ ■ ■ ■ ■ ■ ■ ■ (●●●●과) ◎ ● ◎ ● ◎ ● ◎ ● (●●●●과) |
| 7 | 위탁연구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관리 부적정 | 통보 | ▮▮▮▮▮▮▮▮ (■ ■ ■ ■ 과, ■ ■ ■ ■ 과) |

5

문제점 및 처분요구

①

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용역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
□□□□□□과

- (감사사항) ○○○○○○○○ 종합감사(2019. 4. 25.)
- (지적사항) 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용역비 산정 및 지체상금 부과기준 부적정
 -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안요청서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을 강구

【 문제점 】

- 「기상레이더 유지관리용역 추가 특수조건」 제13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정기점검 및 보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통보 후 현장도착 시간을 초과하거나 장애복구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함

※ 지체상금: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

- 그런데 지체상금 부과는 복구기준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지체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장애발생 시각부터 적용하여 지체상금 과다부과

| 연번 | 지점명 | 장애시간 | 당초 산정 | 재산정 | 비고 (과다부과) |
|----|-----|------------------------------|------------------------|------------------------|--------------|
| 1 | 면봉산 | 2020.1.21. 18:00~1.22. 19:55 | 25시간 55분 (274,015원) | 1시간 55분 (20,265원) | 253,750원 |
| 2 | 진도 | 2020.6.4. 19:50~6.7. 2:20 | 54시간 30분 (896,411원) | 30시간 30분 (501,661원) | 394,750원 |

【 처분요구 】

- 지체상금 재산정 금액에 따라 과다 부과한 지체상금 반환하여 시정조치 (시정)
 - (주)AAA: 253,750원, (주)BBB·(주)CCC: 394,750원

- (감사사항) 수의계약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2019. 4. 25.)
- (지적사항) 수의계약에 대한 검사(검수) 부적정
 - 검사(검수)를 하면서 검사할 장소가 제주도(과학원 본원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게 위임하지도 않고, 검사공무원이 현지확인 없이 검사함

【 문제점 】

- ●●●●●●●●은 원격근무지 검사(검수)를 위해 ‘원격근무지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방안은 원격근무지의 경우 필요시만 검사자가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감독자의 보고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의 '20년도 원격근무지 관련 계약의 검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종검사는 감독조서로 같음할 수 없는데도 위 방안에 따라 현지 검사 없이 감독자의 확인으로 대체함

- ※ 기후변화감시소 관련(안면도 등) 9건('20년)을 확인한 결과 검사공무원의 현지검사 미실시
- ※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경우 공무원만 근무하고, 교통 여건상 현지출장 검사 애로

【 처분요구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각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감독과 검사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여 최대한 계약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원 검사자가 가능한 현지출장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원격근무지 계약관리 방안’을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통보)

- (감사사항) ○○○○○○ 종합감사(2019. 7. 10.)
- (지적사항) 항공기상특보 발표 세부기준 불합리
 - ‘항사특보’에 대해서 「기상법 시행령」과 「항공기상업무규정」이 정한 특보발표 업무가 부합되도록 「기상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발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현상의 특보에 대한 적정한 발표기준과 절차 마련

【 문제점 】

- 「기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황사’ 항공기상특보에 대해 「항공기상업무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표하고 있어, 「항공기상업무규정」을 개정하여 현행화 함
- 그런데 ‘황사’가 포함된 다른 지침(항공방재기상 업무지침, 군 공항 기상업무지침, 항공기상관측지침)은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특보발표 기준치 등 세부기준이 정하고 있지 않은 우박 등 기타현상(서리, 어는 강수,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모래 또는 먼지폭풍, 스콜, 화산재, 지진해일, 화산재 침전물, 유독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발표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처분요구 】

- ‘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지침’(전부개정, 2020.6.10.)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특보 종류와 불일치 사항 개선
- 발표기준이 없는 기상현상에 대해 경보 관련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기준 등 마련 (통보)

④

장비장애 조치 관련 계획정지 관리 미흡

■■■■■
△△△△과

- (감사사항)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사원 대행감사, 2019. 10. 1.)
- (지적사항) 기상관측장비 장애관리 부적정
 - 계획에 의한 인위적 중단이 아닌 장비장애를 “계획정지”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의한 장애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을 강구

【 문제점 】

- △△△△과는 장비장애 시 계획정지 등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장비장애와 계획정지 분류 기준을 개선**(2019. 12. 27.)
 - 계획정지: 사전에 계획되거나 장비 보호를 위해 **미리 장비의 가동을 중단**
 - 장애: 장비 자체고장, 전원 통신 등으로 자료 미생산·전송, 오류 상태가 계속
- 그런데 장비장애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계획정지로 관리하는 사례가 2019년 10.15%에서 감사조치 후 약 9%로 감소했지만 기준에 정한대로 관리되지 않음
 - 2021년(1. 1.~6. 7.) 장애를 계획정지 등록한 사례는 총 76건이며, 이 중

42건은 기반시설 파손 장비교체, 접근불가 및 입도지연, 외부요인(전원·통신공사) 등으로 장애 복구가 중단되어 계획정지로 변경

- 그 결과, 장비장애 시 계획정지로 등록할 경우 장애 복구가 늦어질 우려가 있음

【 처분요구 】

- 장비장애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장애 및 계획정지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장애등록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통보)

⑤

기상관측장비 예비품 이력관리 미흡

■■■■■■■■■■■■■■■■■■■■
▲▲▲▲▲실

- (감사사항) ■■■■■■■■■■■■■■■■■■■ 종합감사(2018. 10. 26.)
- (지적사항) 예비품 이력관리 및 반출처리 업무 소홀
 - 예비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예비품 구매 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비품의 검정 및 반출업무 처리 등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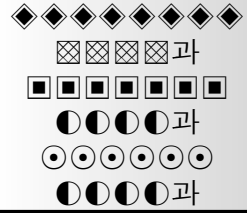
- 관측장비의 센서 등을 교체할 경우 우선 기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에 예비품으로 등록한 후 ■■■■■■■■■■■■■■■■■■■의 불출 승인을 받은 후에 유지관리업체가 센서 등을 교체해야 함
- 그런데, 2021년(1.1.~6.7.) 파고부이 예비품 관리대상 센서(자료처리기, 수온계, 파고계, 배터리)를 41건(자료처리기 14건, 수온계 5건, 파고계 1건, 배터리 21건) 교체하면서 예비품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함. 또한, 선박사고 등으로 인해 파고부이 신규 장비 19대 설치하고도 세부 센서를 예비품으로 등록하지 않음
- 그 결과, 예비품을 미등록하고 불출 승인 없이 센서 등을 교체함으로써 관측장비의 이력이 누락되고, 관측자료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처분요구 】

- 주요센서 교체 등 예비품 이력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비품 등록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통보)

⑥

개별운영 중인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통합운영 미흡



- (감사사항) 2018년 ○○○○○○ 종합감사(2018. 5. 23.)
- (지적사항)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개별운영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용 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운영 중인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통합운영 체계 마련**

【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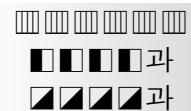
- 2019년 밀양·충주 기상과학관 홈페이지는 기상청 클라우드 내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고, 2020년 ☒☒☒☒과로 과학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2020년 기상박물관 개관 시 밀양·충주와 홈페이지를 통합하면서 **전체 박물관 과학관 통합 메인화면은 구성하였음**. 그러나, 대구·전북 기상과학관은 **예산 미확보를 사유로 현재까지 별도 도메인으로 운영 중**
 - 관람료는 현장에서 결제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현재 박물관, 밀양·충주는 DDD 예약시스템을 활용 중

【 처분요구 】

- 대구·전북 기상과학관 홈페이지를 기상청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통합운영 방안 마련 (통보)**

⑦

위탁연구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관리 부적정



- (감사사항) □□□□□□□□ 연구수행 및 기관운영실태 특정감사(2018. 2. 19.)
- (지적사항) 위탁연구과제 용역계약 검사·검수 업무처리 부적정
 - 위탁연구과제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등 문서 접수 및 등록, 검사·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

【 문제점 】

- 〰〰〰〰〰〰〰〰은 SPREP(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과 협약에 따른 「기후서비스를 통한 국가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바누아투 웹기반 농업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위탁용역 추진
 - ※ 3단계 사업(2019. 2. 15.~2020. 12. 31.)/ 323,000천 원/ (주)EEE
- 사업추진 중 과제 발주기관인 GCF(녹색기후기금)의 예산 불확정으로 〰〰〰〰〰〰〰〰은 위탁용역사업 조기 종단을 결정하고 계약을 해지함(2019. 12. 6.)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어 위 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으로 기능점수 방식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과업별로 산정해야 함
-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함
 - ▶ 그런데 〰〰〰〰〰〰〰〰은 제안요청서의 14개 요구사항이 추진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계별 비용산출이 어려운데도 웹 및 앱 시스템 개발, 바누아투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8개의 AWS의 DB와 실시간 연결, 농업영향 지수 생산기능 등을 완료했다고 평가 후 1단계 사업비 127,242,420원을 지급
 - ※ 조기종료 타당성 평가[(내부 2인, 외부 3인), 2019. 12. 13.] 및 최종보고회[(내부 2인, 외부 3인), 2019. 12. 24.] 평가하여 과업완료 적정성 판단
 - ▶ 따라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위한 용역사업 산출내역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처분요구 】

- 〰〰〰〰〰〰〰〰은 중단되었던 2단계 사업을 발주(예산:99,000천 원)한 바 계약체결 후 착수계를 받아 세부과업별 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 강화 (통보)
 - ※ 「위탁사업과제 선정·관리 및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